

2020.07.03.부터 시행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에 따른 종합검사 확대 지역 안내

대기관리권역법령 시행(20.04.03)에 따라, 고객님의 자동차 등록주소지는 '20.07.03.부터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 영암군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등록된 노후차량 관리의 일환으로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종합검사가 무엇인가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하여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형태의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종합검사의 적용 대상 *모든 자동차 ※단,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 제외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차령 4년 초과인 자동차	단, 해당하는 차량 중 배출가스정밀검사 확대 시행 시기 전인 7월 2일까지 자동차검사를 수검하실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7월3일 부터는 종합검사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기타자동차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종합검사의 적용 예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실제 검사일	검사구분
2020년 7월 2일 이전	2020년 7월 2일 이전	정기
	2020년 7월 3일 이후	정기
2020년 7월 3일 이후	2020년 7월 2일 이전	정기
	2020년 7월 3일 이후	종합

○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기타문의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470-2460)

종합검사 가능 예정 업체

- ◇제일공업사(영암읍 영암로 1343) ☎473-5171
- ◇대불자동차공업사(삼호읍 녹색로 1246) ☎462-2400
- ◇디케이모터스(삼호읍 대불역로 219) ☎464-0078